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국제분쟁해결절차

(조정 및 중재규칙 포함)

2021년 3월 1일 규칙 개정 및 발효

[icdr.org](https://www.icdr.org)

목차

서설.....	6
국제조정.....	7
국제중재.....	8
국제신속절차.....	10
ICDR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11
국제조정규칙.....	13
M-1. 당사자들 간의 합의.....	13
M-2. 조정의 개시.....	13
M-3. 대리.....	14
M-4. 조정인의 선정.....	14
M-5. 조정인의 공정성 및 고지의무.....	15
M-6. 공석.....	15
M-7. 언어.....	15
M-8. 조정인의 의무와 책임.....	16
M-9. 조정 절차.....	16
M-10. 당사자의 책임.....	17
M-11. 비공개.....	17
M-12. 비밀유지.....	17
M-13. 속기록 금지.....	18
M-14. 조정의 종료.....	18
M-15. 책임 배제.....	19

M-16. 규칙의 해석 및 적용	19
M-17. 예납금.....	19
M-18. 경비	19
M-19. 조정비용.....	19
국제중재규칙	20
제1조: 규칙의 적용 범위.....	20
중재의 개시.....	21
제2조: 중재통지 및 신청인의 1차 서면.....	21
제3조: 답변 및 반대신청	22
제4조: 관리회의	23
제5조: 국제행정검토위원회	23
제6조: 조정.....	23
제7조 긴급 보호 처분.....	23
제8조: 인입.....	25
제9조: 병합.....	26
제10조: 신청, 반대신청, 또는 항변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28
제11조: 통지	28
중재판정부.....	28
제12조: 중재인의 수.....	28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28
제14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30
제15조: 중재인 기피.....	31
제16조: 중재인의 교체	32

제17조: 중재판정부 보조인	33
일반 조건	33
제18조: 당사자 대리	33
제19조: 중재지	33
제20조: 중재언어	34
제21조: 중재관할권	34
제22조: 절차의 진행	35
제23조: 조기 처분	36
제24조: 정보 교환	36
제25조: 특권	38
제26조: 심리기일	38
제27조: 임시처분	39
제28조: 중재판정부 선정 전문가	40
제29조: 의무의 해태	40
제30조: 심리의 종결	41
제31조: 포기	41
제32조: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	41
제33조: 판정의 기한, 형식 및 효력	42
제34조: 준거법 및 구제 방법	42
제35조: 화해 또는 기타 종료 사유	43
제36조: 판정의 해석 및 정정	44
제37조: 중재비용	44
제38조: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경비	45

제39조: 예납금.....	45
제40조: 비밀유지.....	46
제41조: 책임 배제.....	46
제42조: 규칙의 해석.....	47
국제신속절차.....	48
제E-1조: 신속절차의 적용 범위.....	48
제E-2조: 상세한 주장의 제출.....	48
제E-3조: 관리회의.....	48
제E-4조: 신속절차의 적용에 대한 이의.....	48
제E-5조: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변경.....	48
제E-6조: 중재인의 선정 및 자격.....	49
제E-7조: 절차기일 및 명령.....	49
제E-8조: 서면에 의한 절차.....	49
제E-9조: 구술심리기일이 수반된 절차.....	49
제E-10조: 판정.....	50
관리요금.....	51
관리요금 효율표 (표준 및 변동 요금).....	51

국제분쟁해결절차 (조정 및 중재규칙 포함)

서설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이다. ICDR 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세계 각지에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ICDR 의 중재 및 조정은 당사자들이 정한 어떠한 언어로도 진행될 수 있다. ICDR 절차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한 최선의 국제 실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중재인 및 조정인에게 완전한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조정인 및 중재인의 효율적인 절차 운영에 대한 필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다.

사건의 국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CDR 은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모델법상 국제중재에 대한 정의를 준용한다.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재는 국제성을 띤 것으로 보아 ICDR 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 상사관계에서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서 수행되는 경우;
- 계쟁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가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 중재지가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또는
-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그 모회사 및/또는 자회사 포함)가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국제조정규칙 또는 국제중재규칙에서 “당사자”, “신청인” 또는 “중재인”과 같은 단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지칭하는 주체가 복수라면 해당 용어는 복수를 포함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라는 표현은 참여 당사자 내지 당사자들을 의미한다.

이 규칙의 공식 문서는 영문본이다.

국제조정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와는 독립된 일정으로 또는 중재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의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조정인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개정된 국제조정규칙은 전 세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행, 문화 및 접근법을 고려하는 개선된 체계를 제공한다.

국제조정규칙의 특징:

-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조정인을 찾아 선정하는 데 ICDR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둠;
-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정인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함;
- 준비회의, 기술 사용, 문서 교환,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회의, 교신 등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의 통제권과 효율적·효과적인 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조정절차” 규칙을 포함함;
- 싱가포르 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을 인용함;
-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규 준수 및 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국제조정규칙의 적용이 추정되도록 함.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분쟁조정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을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우선 ICDR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조정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및*
- b. *조정언어는 _____로 한다.*

한편, 당사자들이 조정을 활용하여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정 회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하기 분쟁을 ICDR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ICDR이 관리하는 조정에 회부한다. (이 조항에는 조정인(들)의 자격, 조정지 및 그 밖에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중재

분쟁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될 수 있다. ICDR 중재에서 각 당사자에게는 이 규칙과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변론할 기회가 제공된다.

국제중재규칙의 특징:

- ICDR의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된 국제행정검토위원회(International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로 하여금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행정적 분쟁을 결정하도록 하는 ICDR의 실무를 성문화함;
- 중재적격 및 관할 문제를 먼저 법원에 회부할 필요 없이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가 절차기일에서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도록 정함;
- 중재 진행 중 당사자들이 조정을 한다는 추정을 도입하면서, 어느 당사자든 이러한 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인용 가능성이 있거나, 쟁점들을 처리 또는 정리할 수 있거나, 또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쟁점에 관한 조기 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를 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당사자가 긴급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 및 긴급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소명하여 긴급처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삼(3) 영업일 이내에 긴급 보호조치를 위한 특별 긴급중재인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요청의 범위를 관리하고, 미국 소송에서 사용되는 방식의 증거개시 실무를 관리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방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가 제 3 자 자금 제공자 및 기타 비(非)당사자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절차 진행 중에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함;
- 법령, 관리기관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명령 및 판정이 전자서명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예납한 모든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판정을 내려 달라고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당사자들은 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장래의 분쟁을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ICDR이 관리하는 중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중재인의 수는 (1인 또는 3인)으로 한다;
- b.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 c. 중재언어는 _____로 한다.

조항 작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www.icdr.org의 조항 작성 페이지에 게시된 **ICDR 국제분쟁해결조항 작성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분쟁해결 조항 또는 합의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유용한 옵션에 관하여 ICDR과 상의할 수 있다. **ICDR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에 제공된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AAA 및 ICDR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중재 및 조정 합의를 작성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을 지원하고자 간단한 자기 안내식 절차인 **ClauseBuilder®**라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하였다.

국제신속절차

신속절차는 당사자들에게 중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신속하고 간소화된 중재절차를 제공한다.

신속절차는 이자와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고지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규모의 사건에도 이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국제신속절차의 특징:

-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모든 규모의 사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접수 요건을 자세하게 명시함;
-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중재인 선정 절차를 제공함;

-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들의 명부에 접근하고 이를 통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의 참석을 요하는 중재인과의 절차기일을 조기에 진행하도록 요청함;
- 미화 100,000 달러 이하의 사건은 서면 심리를 통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 신속 일정 및 구술심리가 예정된 경우 제한된 일수의 심리기일 진행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 심리기일의 종결일로부터 또는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및 증거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함.

당사자들이 분쟁금액에 관계 없이 신속절차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의 국제신속절차에 따라 ICDR이 관리하는 중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 b. 중재언어는 _____로 한다.

ICDR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ICDR 또는 AAA에 사건을 개시하려는 당사자들은 www.icdr.org의 AAASWebFile® (사건 접수 및 관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 우편, 특송 또는 팩시밀리(팩스)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ICDR 또는 AAA 사무국을 통해 ICDR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우편: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Case Filing Services

1101 Laurel Oak Road, Suite 100

Voorhees, NJ, 08043

United States

AAAWebFile: www.icdr.org

이메일: casefiling@adr.org

전화: +1-856-435-6401

팩스: +1-212-484-4178

미국 및 캐나다 내 수신자요금부담 전화: +1-877-495-4185

미국 및 캐나다 내 수신자요금부담 팩스: +1-877-304-8457

이 규칙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ICDR 웹사이트 www.icdr.org 를 방문하거나 +1.212-484-4181 로 연락하기 바란다.

국제조정규칙

M-1. 당사자들 간의 합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국제조정규칙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기존 또는 장래의 국제분쟁을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인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또는 AAA 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화해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이 회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되고 발효된 이 국제조정규칙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규칙의 어느 부분이든 변경할 수 있다.

M-2. 조정의 개시

1. 분쟁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이메일, 우편, 특송 또는 팩스로 ICDR 의 지역 사무국 또는 사건관리센터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ICDR 의 주관 하에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www.icdr.org 에서 ICDR 의 AAA WebFile® 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casefiling@adr.org)로도 접수 가능하다.
2.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위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정보를 ICDR 과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a. 모든 분쟁 당사자 및 조정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일반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b. 당사자들의 계약에 포함된 조정 조항 또는 당사자들의 조정 약정의 사본;
 - c. 분쟁의 성격 및 신청취지에 관한 간략한 진술; 그리고

- d. 특정 조정인의 추천 또는 조정인이 갖춰야 할 자격.
3. 당사자들이 기존 또는 장래의 분쟁을 ICDR의 주관 하에 조정하기로 정하는 기존의 약정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ICDR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가 “자발적인 회부에 의한 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ICDR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분쟁에 관여된 상대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정 회부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시도한다.

M-3. 대리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대리할 자를 선택할 수 있다. 대리인들의 성명 및 주소는 모든 당사자들과 ICDR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M-4. 조정인의 선정

ICDR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조정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인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인 선정 방법을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조정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 a. ICDR은 조정신청서 수령 후 ICDR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당사자들은 제공된 후보자 명단에서 1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ICDR에게 알리도록 권장된다.
- b. 만일 당사자들이 1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수락할 수 없는 후보자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를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ICDR에 회신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명단을 회신하지 않는 당사자는 명단에 포함된 모든 조정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ICDR은 당사자들이 지정한 선호도에 따라 명단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c. 어떤 이유에서든 제출된 명단에서 조정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ICDR은 추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ICDR ‘조정인 명부’의 다른 후보자 중에서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M-5. 조정인의 공정성 및 고지의무

1. ICDR 조정인들은 조정 사건의 조정인으로 선정된 시점에 시행 중인 ‘조정인 표준 행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 행동기준이 이 조정규칙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이 조정규칙이 우선한다. 표준 행동기준에 의하면 조정인은 (i)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정을 거절하고, (ii) 조정인이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고 조정인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실제 및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2. ICDR 조정인은 조정인 선정 수락에 앞서 합리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ICDR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의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기한 내에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ICDR은 이러한 고지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사항을 수령한 후 이해충돌을 다룰 권리를 포기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해당 조정인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인의 이해충돌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정의 완전성을 훼손시킨다고 보일 경우, 조정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M-6. 공석

조정인이 업무 수행을 원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ICDR은 제M-4조에 따라 다른 조정인을 선정한다.

M-7. 언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언어는 조정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M-8. 조정인의 의무와 책임

1. 조정인은 당사자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기결정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자발적이고 강요 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당사자들이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3. 조정인은 어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도 아니며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M-9. 조정 절차

1. 조정인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인은 사건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정인으로 선정된 즉시 당사자들과 준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절차를 정함에 있어,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신청취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교환하도록 권장된다. 조정인은 사건의 기초가 되는 이해관계 및 당사자들 간의 협상 경위를 포함한 쟁점들을 다루는 서면을 교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희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조정인과의 별도 교신을 통해 조정인에게만 송부할 수도 있다.
3. 조정인은 예정된 조정기일의 진행 중 또는 그 전후에 당사자들 및/또는 그 대리인들과 별도로 또는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대면, 서면,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화해안을 권고할 수 있다.
5. 예정된 조정기일(들)에서 다툼이 있는 쟁점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자들과 일정 기간 협의를 계속할 수 있다.
6. 절차의 초기단계 또는 준비회의에서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 및 법령 준수를 위해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M-10. 당사자의 책임

1. 당사자들은 화해합의의 체결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절한 대리인들이 조정기일에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예정된 조정기일에 앞서 그리고 조정기일의 진행 중 의미 있고 생산적인 조정의 준비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M-11. 비공개

조정기일(들) 및 조정 관련 협의는 모두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은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허락 및 조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M-12. 비밀유지

1.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당사자들 또는 기타 참가자들이 고지한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정인은 조정을 통해 입수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정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수한 모든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정인은 대심적 절차 또는 사법기관에서 상기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정
에 관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적
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사항을 어떠한 중재, 사
법 또는 기타 절차에서도 증거로 삼거나 제출할 수 없다:
 - a.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잠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표명한 견해나
제안;
 - b.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인정한 사항;
 - c. 조정인이 표명한 견해나 제안; 또는
 - d. 조정인이 제시한 화해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M-13. 속기록 금지

조정 절차에 대한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M-14. 조정의 종료

조정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 a. 당사자들에 의한 화해합의 체결; 또는
- b. 추가 조정 노력이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정인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선언; 또는
- c.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일방 당사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선언; 또는

- d. 조정기일 종결 후 21 일 이상 조정인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간 교신이 없을 경우; 또는
- e.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화해합의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조정인 또는 ICDR 에게 (조정인이 화해합의에 서명을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 과정에서 화해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증명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M-15. 책임 배제

ICDR과 조정인은 조정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필수적 당사자가 아니다. ICDR과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과 관련된 오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M-16. 규칙의 해석 및 적용

조정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한도 내에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른 규칙은 모두 ICDR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M-17. 예납금

조정인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ICDR은 조정기일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조정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비용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예납할 것을 요구하고, ICDR은 당사자들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며 조정 종료 후에 미사용 금액을 반환한다.

M-18. 경비

여비, 기타 경비 및 조정인 보수를 포함한 모든 조정 경비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참석한 참가자의 경비는 참석을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M-19. 조정비용

시행 중인 관리요금 요율은 www.adr.org/internationalfeeschedule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제중재규칙

제1조: 규칙의 적용 범위

1. 당사자가 이 국제중재규칙(“규칙”)에 의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인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또는 AAA를 통해 국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규정한 경우, 중재는 중재 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 우선한다. ICDR은 이 규칙의 관리자이다.
2. 중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되, 규칙의 어떤 규정이 당해 중재에 적용 가능한 법률 중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3.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하거나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ICDR 또는 AAA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로써 ICDR에게 중재절차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 규칙은 ICDR이 중재절차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관리자는 ICDR의 사건 관리 사무소, AAA 또는 ICDR이나 AAA가 협력약정을 체결한 다른 중재기관의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직 ICDR 또는 ICDR에서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기관만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한 고지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신속절차가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그 외의 사건의 경우에도 국제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신속 절차와 저촉되지 않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 추가하여, 국제신속절차를 규정한 이 규칙 제E-1조 내지 제E-10조가 적용된다. 이자,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중재비용을 제외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1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구술심리기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은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중재의 개시

제2조: 중재통지 및 신청인의 1차 서면

1. 중재를 개시하는 당사자(“신청인”)는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자와 신청의 상대방인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중재통지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www.icdr.org에 있는 관리자의 AAA Webfile® 또는 이메일 (casefiling@adr.org)을 통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2. 중재는 관리자가 중재통지서를 접수하는 일자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3. 중재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는 신청;
 - b. 각 당사자 및 파악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 c. 원용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중재합의 전체의 사본. 만약 신청이 복수의 중재합의를 근거로 할 경우, 각 신청이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사본;
 - d. 분쟁이 발생한 또는 분쟁과 관련된 계약의 인용;
 - e. 신청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기술;
 - f. 신청취지 및 신청금액; 및

- g. 선택적으로, 중재인 지명 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중재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중재 전 또는 중재와 동시에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는 제안
4. 중재통지서 제출 시에는 소정의 접수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5. 관리자는 중재통지서 수령 후 곧바로 중재에 관하여 모든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고 중재 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 답변 및 반대신청

1. 피신청인은 관리자가 중재통지서 수령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중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반대신청 및 상계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소정의 접수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4. 피신청인은 관리자가 중재 통지 수령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사전 합의가 없는 신청인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거나, 중재인 지명 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피신청인이 중재 전 또는 중재와 동시에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는 자신의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5.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관리자는,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절차가 중지되는 것

은 아니다.

7.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중재의 경우,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다른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한 다른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4조: 관리회의

관리자는 중재인의 선택, 분쟁의 조정, 절차의 효율화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당사자간 논의 및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국제행정검토위원회

관리자가 이 규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국제행정검토위원회(IARC: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를 통하여 여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재인의 선정 또는 업무 계속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결정, 임명될 중재인의 수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결정, 또는 당사자가 중재를 개시하거나 접수하기 위한 규칙상의 행정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IARC는 중재지에 관하여 일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종국적인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한다.

제6조: 조정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b) 어느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사자들은 중재와 병행하여 ICDR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 보호 처분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관리자 및 다른 당사자 모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a. 신청하는 구제의 성격;
- b. 중재판정부의 선정 전에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
- c. 해당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 그리고
- d. 구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겪게 될 피해 또는 불이익.

신청서는 중재통지서의 제출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의 지불,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제7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1인의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선정을 수락하면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14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기피신청은 관리자가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 선정 및 고지된 상황을 전달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긴급중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선정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검토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 일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변론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면 심리기일을 대체하는 전화, 화상회의, 서면심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포함하여 제2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유하며, 이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여하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긴급중재인은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지명령 및 처분을 포함하여 긴급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관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긴급중재인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제27조에 따라 내려진 임시처분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내려진 때로부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이러한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5.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구제에 대한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확인, 재고,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6. 긴급구제에 대한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해당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일방 당사자가 관할 사법당국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7조 또는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긴급중재인은 임시처분의 신청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비용의 최종적인 안분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다.

제8조: 인입

1. 제3자를 중재에 인입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통지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b) 구성이 완료된 중재판정부가 제3자의 인입이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추가 당사자도 중재 참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1인의 중재인이라도 선정된 후에는 당사자를 추가로 인입시킬 수 없다. 제3자를 중재에 인입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중재통지서를 추가 당사자 및 다른 당사자들 모두에게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해당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

을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의 개시일로 본다. 제13조 및 제21조가 제3자의 중재 참가에 준용된다.

2. 인입신청서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정의 신청요금이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3. 추가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해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

제9조: 병합

1.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합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병합중재인은 이 규칙에 따라, 또는 이 규칙과 AAA나 ICDR이 관리하는 다른 중재규칙에 따라 계속 중인 두 건 이상의 중재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병합중재인 선정에 합의한 경우; 또는
 - b. 복수의 중재에 제기된 모든 신청과 반대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 c. 복수의 중재합의에 따라 복수의 중재에서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주장이 제기되고, 해당 중재에 동일한 또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연관되며, 해당 중재에서의 분쟁들이 동일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으며, 복수의 중재합의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병합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 a.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병합중재인 선정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병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 b. 상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병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가 병합중재인을 선정한다.

- c.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잠재적 병합 대상인 진행 중인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병합중재인이 될 수 없다.
 - d. 병합중재인의 선정에는 이 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가 적용된다.
3. 병합중재인은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들)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a. 준거법;
 - b. 복수의 중재에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동일하거나 상이한 자들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 c. 중재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
 - d. 복수의 중재에서 공통된 법 및/또는 사실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는지 여부; 및
 - e. 중재의 병합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지 여부.
4. 병합중재인은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또는 모든 중재에 대해, 병합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복수의 중재가 병합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병합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먼저 개시된 중재로 병합된다.
6. 병합중재인이 하나의 중재에 하나 이상의 다른 중재를 병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중재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병합중재인은 기존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중재판정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병합된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병합된 절차의 중재판정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병합중재인은 병합된 절차의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7. 병합에 관한 결정은 이유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병합에 관한 최종 서면 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제10조: 신청, 반대신청, 또는 항변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중재판정부가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지체, 다른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여겨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상계, 또는 항변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에 대한 판정 및/또는 관리자가 결정한 신청요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통지와 서면 교신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의 이메일, 우편, 특송, 팩스 또는 기타 서면 양식의 전자 교신 또는 직접 교부 등 송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을 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지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진행 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중재판정부

제12조: 중재인의 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인의 수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단, 관리자가 사건의 규모, 복잡성 또는 기타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합의된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관리자는 제13조 제6항에 규정된 ICDR 중재인명부 선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관리자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중재인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중재인 선택 시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가용도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선택된 중재인들에게 ‘선정통지서’가 이 규칙의 사본과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 절차나 중재인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중재인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된 절차에 따른 기한 내에 모든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당 절차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관리자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요청한 후, 중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가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이들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5. 중재의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자는 모든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택하지 않고 선정방식에 관하여도 합의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재량으로 ICDR 중재인명부 방식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중재인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제출된 명단에서 중재인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이 권장되며 그 합의 내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단 수령 후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명단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대하는 후보자의

성명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성명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이를 관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선택 명단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어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그 명단을 회신하지 않으면 명단의 모든 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이 회신한 명단에서 승인된 자들 중 공통으로 선호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중재인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명단에 있는 어떤 자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용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가용도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는 추가 명단의 제출 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장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7.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중재인이 완성하고 서명한 선정통지서를 관리자가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

제14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1. 이 규칙에 따르는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규칙,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의 조건 및 상사분쟁에서의 중재인 윤리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정 수락 시 중재인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모든 사유 및 당사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타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중재절차의 단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 또는 당사자는 이를 모든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중재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면 이를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재인 또는 당사자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반드시 고지된 정보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한다고 해당 중

재인 또는 당사자가 판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당사자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를 알게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사유에 기초하여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당사자 지명 중재인 후보자와 중재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교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후보자에게 분쟁의 일반적인 성격 및 예상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후보자의 자격, 가용도 또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선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후보자가 의장중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은 의장중재인 후보자와 중재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교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협의 후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다음을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
 - a. 비(非)당사자(제3자 자금 제공자 또는 보험자 등)가 당사자의 중재 참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는지 여부. 만일 그럴 경우,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업무관계를 설명함.
 - b. 비(非)당사자(자금 제공자, 보험자, 모회사 또는 수익적 소유자 등)가 중재 결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만일 그럴 경우,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이해관계를 설명함.

제15조: 중재인 기피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법률의 규정, 또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이상,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기피신청을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의 근거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기피신청을 중재판정부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2. 기피신청 접수 시 관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통지를 중재판정부 구성원에게 발송할 수 없으나, 중재판정부에게 기피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되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수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대상 중재인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의 대상인 중재인은 관리자와 협의한 후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단, 위 각 경우에 중재인이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자는 직권으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인의 교체

1.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하한 사유로 해임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된다.
2. 이 조항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단독재량에 따라 중재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3인 중재판정부 중 중재인 1인이 사유를 불문하고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두 중재인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계속 진행하고 판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 1인 없이 중재를 계속 진행하거나 판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나머지 두 중재인은 중재 진행 단계, 세 번째 중재인이 밝힌 불참 원인 및 사건 정황상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나머지 두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참여 없이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자는 세 번째 중재인의 결원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재판정부 보조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ICDR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중재판정부 보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일반 조건

제18조: 당사자 대리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상대방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부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동시에 참조하여 중재판정부와 직접 서면으로 교신할 수 있으며, 이때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시에 관리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할 수 있다. 당사자 대리인은 대리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ICDR이 발간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재지

1.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지정한 날까지 중재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중재지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재지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진행, 회의 개최, 증인의 신문, 재산 및 문서 조사 또는 평의를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와 다른 곳에서 회합할 경우, 중재와 판정은 중재지에서 진행되고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중재언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언어는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단, 중재판정부는 이와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중재판정부는 다른 언어로 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중재언어(들)로 번역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 중재관할권

1. 중재판정부는 중재적격 및 중재합의의 존부, 범위,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포함한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그리고 중재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 반대신청 및 상계권의 행사가 하나의 중재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문제를 먼저 법원에 회부할 필요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을 무효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3.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나,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중재관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의 이유가 되는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선결문제 또는 중재판정의 일부로 결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제기된 중재관할에 관한 문제는 관리자의 사건 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에게 회부되어 결정된다.

제22조: 절차의 진행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며 자신의 사건을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하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후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 편성 및 합의할 목적으로 절차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사건의 절차를 정함에 있어서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다.
3. 절차기일에서 중재판정부는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 및 법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를 결정하고, 절차를 분리할 수 있으며, 입증 순서를 지시할 수 있고, 입증취지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진술 또는 기타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 서증 또는 기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게 제출한 문서 또는 정보는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달리 지침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관리자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한다.
7.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그 증명력을 결정해야 한다.
8. 당사자들은 중재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효율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 처분

1. 당사자는 본안에 관한 심리기일에 앞서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여하한 쟁점에 대한 처분 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조기 처분”).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신청이 (a) 합리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b) 사건에서 하나 이상의 쟁점을 해결하거나 정리할 수 있으며, (c) 상기 신청의 고려가 해당 쟁점을 본안과 함께 결정되도록 놔두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경우, 당사자가 조기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신청에 관한 심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이 허가될 경우 조기 처분이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와 사건에 관하여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
3. 중재판정부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여하한 쟁점의 조기 처분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중재판정부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유지의 관점에서 당사자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지연과 비

용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불측의 상황을 회피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와 항변을 공평하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게 각 사건에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의 수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갖는다. 당사자들이 이 조항과 달리 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 및 중재판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각자가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문서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달리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그 존재와 사건 결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서제출 요청에는 특정 문서 또는 문서의 종류에 관한 서술과 함께 문서가 갖는 사건 결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재판정부는 상업적 또는 기술적 기밀성이 주장되는 정보의 교환에 대해 그 기밀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6. 교환될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예를 들어, 종이 사본)으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가 신청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문서에 접근해야 할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요청은 최대한 경제적인 문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좁게 특정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시범 검색 또는 검색을 집중시키고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명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신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 관련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관한 검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전 정보 교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신청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신청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와 같은 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임시명령 또는 판정을 통해 당사자들 간 정보 제공의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9. 일방 당사자가 정보의 교환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불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
10. 미국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정 외 증언녹취, 서면질의 및 [사실]인정요구는 일반적으로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적절하지 않다.

제25조: 특권

중재판정부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교신에 대한 비밀유지 등과 같은 적용 가능한 특권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또는 문서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26조: 심리기일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모든 구술심리기일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심리기일 또는 심리기일의 일부가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a)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b)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중재판정부

는 심리기일에 증인의 물리적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을 신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신문 방식과 증인 신문 시 출석할 자를 결정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는 한, 인 증은 증인이 서명한 서면진술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증인이라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해당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심리기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증인의 성명과 연락처, 진술의 취지 및 증인이 증언할 언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심리기일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상이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27조: 임시처분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지명령 및 처분 등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이와 같은 임시처분은 임시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비용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신청한 임시처분은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를 할 권리의 포기로서 보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는 임시구제 신청에 관한 비용을 임시명령 또는 판정, 또는 중국 판정에서 분담시킬 수 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7조에 따라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중재판정부 선정 전문가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1인 또는 수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쟁점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해당 전문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전문가 간에 요청된 정보 또는 물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3. 전문가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 사본을 발송하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문가를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리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해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의무의 해태

1. 당사자가 제3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증거 제출 또는 기타 절차를 밟도록 적법하게 요청 또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0조: 심리의 종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심리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31조: 포기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 또는 중재합의의 불이행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제32조: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

1.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임시, 중간 또는 일부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인이 복수일 경우 모든 판정,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따른다.
3. 당사자들 또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장중재인은 정보 교환을 포함한 절차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a)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물리적 서명이 요구되거나, (b)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c) 중재판정부 또는 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명령이

나 판정은 전자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제33조: 판정의 기한, 형식 및 효력

1.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는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고 판정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법률의 규정 또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중국판정은 제30조에 따라 심리 종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 권한의 포기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법원 또는 기타 사법당국에 항소, 심리 또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판정의 이유 기재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정에는 중재인의 서명, 판정일자 및 제19조에 따른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의 중재인이 있고, 이 중 서명하지 못한 중재인이 있을 경우, 판정은 서명이 없는 이유의 기재를 포함 또는 수반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초안의 형태로 관리자에게 송부한다. 판정문은 관리자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4. 적용 가능한 법률상 판정문의 접수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요건 또는 기타 중재지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제34조: 준거법 및 구제 방법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2.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에 적용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우호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4. 금전의 배상에 관한 판정의 통화는, 중재판정부가 다른 통화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 통화 또는 통화들로 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계약 및 준거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정 전 및 판정 후에 발생하는 단리 또는 복리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다만, 준거법상 특정한 방식에 따라 전보배상의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중재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중재비용에 관한 판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 화해 또는 기타 종료 사유

1. 중재판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화해를 화해중재판정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2. 관리자가 요구한 예납금의 미납으로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중재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3.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자가 정당한 이의 사유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36조: 판정의 해석 및 정정

1.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판정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의 오류 정정을 요청하거나,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서 누락된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후 이러한 요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관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모든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내에 직권으로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 누락된 신청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대한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제37조: 중재비용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중재비용을 확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재비용을 당사자들이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비용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 a. 적용 가능한 세금을 포함한 중재인 보수 및 경비;
- b.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지원을 위한 모든 비용;
- c. 관리자 수당 및 경비;
- d. 당사자들이 부담한 합리적인 법률 및 기타 비용;

- e. 제7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임시 또는 긴급처분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
- f. 제9조에 따른 병합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 g. 제24조에 따른 정보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

제38조: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경비

1.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는 중재인이 사용한 시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중재가 개시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중재인이 명시한 보수요율 및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및 모든 중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매일 또는 매시간당 적용될 적절한 보수요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39조: 예납금

1.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7조의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선금으로 예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의 진행 중에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요구된 수수료 또는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로 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방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4. 제37(a)조 및 제37(b)조에 따라 요구된 예납금이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요구된 예납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이와 같은 예납금을 납입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이 있으면 예납금 및 여하한 이자의 회수를 위하여 납입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당사자가 요청된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관리자가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6.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관리자는 수령한 예납금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미사용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 비밀유지

1. 중재인 또는 관리자는 중재 기간 중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개한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원 및 관리자는 이 조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또는 판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또는 중재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단, 관리자는 집행 절차 중 또는 기타 사유로 공개된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선별하여 발간 또는 공개할 수 있다.
4. ICDR은 또한 당사자가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의 공개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성명 및 기타 식별 가능한 세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한 선별된 판정, 명령, 결정 및 판결을 발간할 수 있다.

제41조: 책임 배제

중재판정부 구성원,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 보조인과 관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적용 가

능한 법률에 의하여 책임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인, 긴급중재인, 병합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보조인 및 관리자가 중재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어떠한 당사자도 이들을 중재와 관련된 사법 또는 기타 절차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42조: 규칙의 해석

중재판정부, 제 7 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및 제 9 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중재인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이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관리자는 모든 기타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국제신속절차

제E-1조: 신속절차의 적용 범위

이 신속절차는 제1조 제4항에 따라 국제중재규칙을 보충한다.

제E-2조: 상세한 주장의 제출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관계, 신청, 반대신청, 상계 및 항변에 대하여 상세한 주장을 제출하고, 그와 함께 의존하고자 하는 당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중재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서면 제출의 완료에 관한 일정표를 포함하는 절차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E-3조: 관리회의

관리자는 이 절차의 적용, 중재인의 선정, 분쟁의 조정 및 기타 다른 행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과 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E-4조: 신속절차의 적용에 대한 이의

중재인 선정 전에 신속절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자는 중재인이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우선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재인은 분쟁금액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E-5조: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변경

최초 신청 및 반대신청의 접수 후 당사자가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변경하여 그 액수가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 또는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사건은 계속 이 신속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중재인 선정 후에는, 중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 또는 다른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및 금액의 변경이 제출될 수 없다.

제E-6조: 중재인의 선정 및 자격

단독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관리자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5인의 중재인 후보자가 기재된 명단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명단에 있는 중재인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명단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단에서 두 이름을 지우고 남은 후보자들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명단을 관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택 명단의 교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수용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가용도가 없는 경우, 관리자는 추가 명단을 회람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관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과 함께 고지 사항을 통지 받는다.

제E-7조: 절차기일 및 명령

중재인은 중재인 선정 후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대리인 및 관리자와 사건의 절차 및 일정을 논하기 위해 절차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E-8조: 서면에 의한 절차

서면에 기반한 신속절차의 경우, 모든 서면은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술심리기일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E-9조: 구술심리기일이 수반된 절차

구술심리기일이 개최되는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은 심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구술심리기일은, 중재인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아니하는 한, 절차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기일은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대면으로 또는 화상, 음성,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기록 또는 속기록은 지원되지 않는다. 속기록을 원하는 당사

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다. 구술심리기일은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제E-10조: 판정

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판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종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관리요금

관리요금 요율표 (표준 및 변동 요금)

현행 중재관리 비용 체계는 www.icdr.org/feesched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 ICDR 및 AAA. 관련 소유. 이 규칙은 ICDR 및 AAA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재산이며 ICDR/AAA의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의 무단 사용 또는 변경은 저작권법 및 기타 준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2-484-4181 또는 websitemail@adr.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